

#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 미 시

#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 1. 제안이유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구미도시공사)으로의 운영 사무의 위탁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운영

나. 추진근거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3) 「지방자치법」
- (4)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5)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다. 위탁사무 내용 : 시민운동장 일원(체육회관 제외) 체육시설 관리 운영

라. 시설현황

구 분	시민운동장 (1984. 5월)	보조경기장 및 체육회관 (2012. 4월)		박정희체육관 (2000. 12월)	복합스포츠센터 (2020. 12월)
연 면 적	25,390㎡ (7,680평)	17,529.54㎡ (5,302평)		16,518.76㎡ (4,996평)	8,726.03㎡ (2,639평)
건축면적	10,532.4㎡ (3,185평)	1,779.05㎡ (538평)		6,909.4㎡ (2,090평)	4,959.32㎡ (1,500평)
층 수	지상3층	지하1층, 지상5층		지하1층, 지상3층	지하1층, 지상3층
좌 석 수	15,554석 (장애인 159석)	본부석	1,711석	6,273석 (가변1,312석)	1,016석 (장애인 16석)
		인라인	398석		
주차대수 (총1,214대)	일반 1,102 / 버스전용 15 / 장애인전용 56 / 경차전용 39 / 전기차전용 2				
시설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디구장 1면</li> <li>400m트랙(8레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잔디구장, 투포환장</li> <li>400m트랙(4레인)</li> <li>인라인트랙(200m)</li> <li>농구장, 족구장 2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경기장 - A=1,909㎡</li> <li>보조경기장 - A=1,618㎡, 2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볼링장 - 40레인</li> <li>다목적경기장 - A=1,430㎡</li> <li>무대 1개소</li> </ul>	

※ 체육회관 구미도시공사 위탁 제외

다.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라.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구미도시공사)

마. 소요예산 : 3,374백만원 정도(2024년 기준)

※'25년 전출금 예산 요구액 : 20억원(7개월분)

### 3. 부서의견

가.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체육회관 제외)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나. 구미도시공사는 현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생활·국민 체육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등의 시설을 수탁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체육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다. 따라서 구미도시공사에 관리·운영 위탁 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4. 참고사항

- 가. 사진대지
- 나. 관계법령
- 다. 비용추계서

# 시민운동장일원 체육시설 사진대지

## □ 위치도



## □ 사진대지



## 관계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

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 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또는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의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 시민운동장 일원 체육시설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구미도시공사에 시설 운영 위탁 시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및 인건비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구미도시공사 2023년 인건비 기준 및 2024년  
체육진흥과 시설 운영 예산에 준하여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인건비		1,196,137	1,232,021	1,268,982	1,307,051	1,346,263	6,350,454
	○ 시설운영비		1,957,663	2,016,393	2,076,885	2,139,191	2,203,367	10,393,499
	○ 자원부서분담금		220,766	227,389	234,211	241,237	248,474	1,172,077
	합계		3,374,566	3,475,803	3,580,077	3,687,479	3,798,104	17,916,029

※ 물가반영을 연 3% 적용

##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시 비			3,374,566	3,475,803	3,580,077	3,687,479	3,798,104	17,916,029
합 계			3,374,566	3,475,803	3,580,077	3,687,479	3,798,104	17,916,029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체육진흥과 체육시설1팀 황영환(☎480-4916)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주요내용	예산액(천원)	비고
	<b>총계</b>	<b>3,374,566</b>	
인건비	<b>소계</b>	<b>1,196,137</b>	‘23년 인건비 기준
	보수	986,172	
	퇴직급여	92,011	
	평가급	117,954	
시설운영비	<b>소계</b>	<b>1,957,663</b>	‘24년 체육진흥과 예산서 기준
	사무관리비	99,470	청소용품, 사무용품 등
	지급수수료	663,120	방역소독, 안전잔단 관리용역비
	교육훈련비	1,500	안전관리자 위탁교육 등
	임차료	3,360	정수기, 복합기 등
	복리후생비	12,000	피복비,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27,650	인터넷, 방송, 교통유발부담금 등
	여비	27,000	
	재료비	4,200	냉각탑 수처리제, 제초제
	수선유지비	438,500	건축물, 통신장비 등 유지보수
	동력비	652,063	가스, 전기, 수도 요금
	부서운영업무비	4,800	
	배상책임보험 부담금	2,000	
	시설비 및 부대비	22,000	수목 전정공사 등
지원부서분담금	<b>총 경비의 약 7%</b>	<b>220,766</b>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권 순 모
	팀 장	곽 동 근
	담 당 자	황 영 환 (480-4916)